

#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내

## I

## 운영개요

### 1. 법적근거

#### ○ 사회복지급여법 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

**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·군·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
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 ~ 이하 생략 ~

③ ~ 이하 생략 ~

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

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#### ○ 사회복지급여법 시행규칙 제6~7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
**제6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**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,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 ~이하 생략~

**제7조(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(이하 "실무협의체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이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. ~ 이하 생략 ~

#### ○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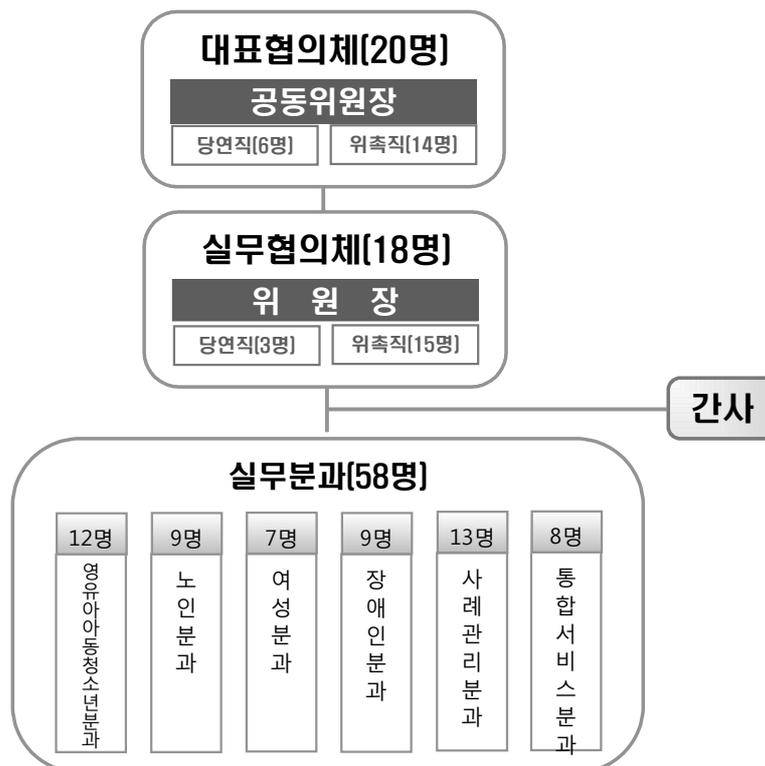
## 2. 운영목적

-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 복지계획수립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 참여복지 구현
-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 기반 마련으로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대응하고, 주민들이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-stop, One-stop으로 제공
-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
-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·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

## 3. 운영목표

-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심의, 평가 및 건의
- 사회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복지정책의 수립, 모형개발 및 건의
- 지역사회 보건·복지 연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활성화
-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민·관 협력 서비스 체계를 구축
-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역복지 특화모델 등 제시

## 4. 협의체 구성현황



## 1. 실무분과 운영의 목적

-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연계·협력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·운영함

## 2. 실무분과 구성 및 역할

### - 영유아아동청소년분과 -

관련기관 및 단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을 제안 및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, 발전을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건강한 양육과 성장을 위해 지역 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며 정책제안을 하는 분과

### - 노인분과 -

노인복지분야 활동기관들이 연합하여 노인복지욕구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하기 위해 연구, 노력하는 분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보장, 건강보장 및 여가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며, 연약한 저소득노인보호를 위해 지역사회보호체계 및 환경을 구축해가는 분과

### - 여성분과 -

여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인재개발 및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 민·관이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분과

### - 장애인분과 -

지역장애인들의 경제적, 생활적, 공간적 자립과 재활지원을 통해 모든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보장받고 장애인복지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연구와 노력 의지를 갖고 장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과

### - 사례관리분과 -

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 대안 제시 및 정책개발을 하는 분과

### - 통합서비스분과 -

서비스 기관들이 함께 연합하여 수혜자 중복서비스 방지 논의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-보건의료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분과

- ※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내 공모사업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분과로 각 분과별 논의 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동해시 전체 복지 관련 현안 제시 및 협의체 사업 모니터링